

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18건의 통보·시정 및 현지 조치

구 분	신분상 조치 (건/명)				행정상 조치 (건)								모범 사례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소계	통보	개선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시정	권고	현지 조치	
18 1	1 1	- -	- -	1 1	17	7	-	3	-	1	1	5	3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번호	조치기관	지적사항	처분사항
1	포항해양경찰서	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공가 및 일반 병가 부적정 사용)	기관경고 시정(8명)
2	포항해양경찰서	보도자료 보안성 검토 결락	통보
3	포항해양경찰서	기념품 구매 및 관리 부적정	권고
4	포항해양경찰서	파출소 연안구조정 유류비 집행 및 검사업무 처리 미흡	통보
5	포항해양경찰서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관리 미흡	통보·주의 (1명)
6	포항해양경찰서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분할집행)	기관경고
7	포항해양경찰서	수사첩보 수집(미제출) 관리대책 마련 필요	통보
8	포항해양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누락	기관경고
9	포항해양경찰서	경찰관 견문수집 및 제출실적 관리 필요	통보
10	포항해양경찰서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훈련 미흡	통보
11	포항해양경찰서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필요	통보
12	포항해양경찰서	RFID 관리 체계 보완 권고 - 과다지급 장비 재배부 및 관리자 실제 점검 등	현지조치
13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 임차차량 운행 결과 작성 등 관리 철저	현지조치
14	포항해양경찰서	방제훈련 결과 보고 기한 준수 필요	현지조치
15	포항해양경찰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관련, 자체 관리계획 수립 권고	현지조치
16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 운영·관리 철저 필요	현지조치

2. 주요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1) 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 **(기관경고·시정)**

○ (판단기준)

가. 공가사용 부적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경우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하고,
- 원격지란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며, 규정상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 사용 가능

나. 병가 사용 부적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①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고,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 제 점) 다음 [표-2]와 같이 휴가제도 사용 시 문제점 확인

[표-2] 휴가제도 사용 시 확인된 문제점

구 분	내 용
공가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 사용이 가능하나, 동해청 관내(포항↔울진)의 경우 공가 사용자 4명 확인
병가	▪ 연도 내 병가 사용 일수가 30일 이상 기간 중 공휴일, 휴무일 미산입으로 병가일수 초과 사용자 12명 확인 ▪ '24~'25년 진단서 첨부 증빙서류 불일치 사용자 4명 확인

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동일 지적사항 재발방지 및 휴가제도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복무관리 철저(기관경고)

[별표] “복무규정 위반 총괄 세부내역”과 같이 관련자 8명 국고 환수 등 규정에 맞게 조치(시정)

[별표]

복무규정 위반 총괄 세부내역

연번	직급	성명	현 근무지	종별	사용일수	시정기준일 ¹⁾	기준연도	비 고
1	##	○○○	●●●●●●●	공무상 병가	198일	18일	2025년	최대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일 180일
2	#&	△△△	◆◆◆◆◆	일반 병가	68일	8일	2024년	최대 일반 병가 사용 가능일 60일 시간 단위 절삭
3	#&	□□□	■□■	일반 병가	70일 4:00	10일	2025년	
4	#&	◇◇◇	♠♠♠	일반 병가	69일	9일	2025년	
5	#&	▽▽▽	♣♣♣♣♣	일반 병가	73일	13일	2025년	
6	#@	○○○	♣♣♣♣♣♣	일반 병가	68일	8일	2025년	
					71일	11일	2026년	
7	#@	●●●	▤▤▤▤▤▤	일반 병가	7일	1일	2024년	연간 병가 누계 6일 불문 (’24년 총 7일 병가 사용 → 1.30 및 4.23 포함)
					1일	-	2025년	불문 (연간 병가 누계 6일 미만)
8	#@	☆☆☆	▨▨▨▨▨▨	일반 병가	36일	27일	2025년	병가의 사유 ×

2) 보도자료 보안성 검토 결락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보안성 검토 책임)에 따르면, 분임보안담당관²⁾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홍보 및 보도자료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하고,

1) 해당 연도 연가보상비를 기준으로 시정기준일에 대해 환수 등 조치하되, 저축 연가가 있는 경우 전환하여 시정 가능
2)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보안담당관)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5. 해양경찰서: 각 과장, 함·정장, 파출소장

-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홍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홍보담당 부서의 장은 보도자료의 보안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포항해양경찰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보안성 검토 여부 확인 결과 해당 기간('24. 6. 1.~ '26. 3. 31.)에 배포하였던 총 326건의 보도자료 전체에 대해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홍보담당 부서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여부 미확인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홍보부서 및 각 분임보안담당관 대상 교육 등을 통해 보안성 검토 과정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통보)

3) 기념품 구매 및 관리 부적정 (권고)

-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및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제작·활용한 기념품 상세내역 점검 결과 물품구매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거나, 구매목적·배부대상 등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확인 불가,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할 목적의 물품을 참석인원에 비해 과다하게 구매하거나 잔여수량에 대한 관리 부실 확인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기념품(홍보물품 등 포함) 구매 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구매·제작하고, 기념품 배부 목록을 작성하여 잔여물품을 관리하는 등 기념품 구매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권고)

4) 파출소 연안구조정 유류비 집행 및 검사업무처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1항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에 따라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하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고,

-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지정된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납품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해양경찰청에서 하달하는 「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기준」에는 검사업무의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책임의 기준을 제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회계연도 말 연안구조정 유류를 집중구매하면서 계약이나 채권 확보 없이 분할집행(4개부서, 총 63건 53,754,750원) 하거나, 실제 급유를 진행하지 않고 검사·검수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게 관서 운영경비로 집행을 한 것을 확인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 회계연도 말(11월 ~12월) 파출소 연안구조정 유류 구매 시 유사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방안 마련(통보)

5)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관리 미흡 (통보 · 개인주의)

-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하나, 그 외 집행잔액은 불용하여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선급)에 서는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³⁾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집행
- (문 제 점) 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순찰차량 유류비 예산배정 내역 중 2025년 12월 4분기 2차 유류비 소요량 파악 시 [표-3]과 같이 2026년 1월 소요량을 예상하여 신청받아 예산을 배정하면서, 회계연도 말 집행잔액의 반납·예산이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한 것을 확인

[표-3] 파출소 유류비 소요량 파악 내역 및 예산배정·집행잔액 현황

연번	부서명	집행잔액	소요예산액	신청금액	배정금액	26년 1월 기준 집행잔액	예산배정 전 유류구매 방법	비고
1	●●파출소	4,075,500	7,000,000	2,924,500	1,754,700	-1,450,000	先사용 後지급 (외상거래)	계약×
2	◆◆파출소	2,217,460	6,000,000	3,782,540	2,069,600	-2,345,690		
3	▨▨▨파출소	5,547,800	10,200,000	4,652,200	2,557,320	0	先지급 後사용 (선결제)	채권×
4	▣▣▣▣파출소	10,639,780	10,639,780	-	-	7,325,530		

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담당자 메모 보고) 재구성

3) 선급지급 대상 : 공사, 제조 또는 용역의 대가 물품(구매)는 지급 제외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각 사업부서 예산·회계담당자 대상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시성 있는 예산배정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통보)

예산배정 및 집행관리를 부실하게 한 세부사업담당자 1명(주의)

6)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분할집행) [기관경고]

- (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에 따르면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하는 금액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
- (문 제 점) [표-4][표-5]와 같이 경비합정 수리대금을 지급하며 관서운영 경비로 교부하여 분할 집행하였고, [표-6]의 경비합정 잡유를 구입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동일한 성격의 지출건을 두차례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집행

[표-4] 관서운영경비 500만원 분할 집행내역(경비합정)

연번	대상합정	지급건명	지급일자	수리일자 (상태보고)	수령인	집행금액	비고	
1	●●●●함	●●●●함 No.2 주기관 L.O 쿨러 점검 및 수리 대금 지급 요청 보고	‘25-11-03	‘25-10-28 (‘25-10-23)	●●●●●●	4,444,000	분할	
2		●●●●함 NO.4 주기관 ASIDE 매니폴더 오링 교체 수리 대금 지급 결의 보고	‘25-11-26	‘25-11-20 (‘25-09-21)		2,934,800		
						소계	7,378,800	
3	◆◆◆◆함	◆◆◆◆함 No.4 주기관 실린더라이너 손상부 복구수리 대금 지급결의보고	‘25-11-26	‘25-11-13 (‘25-08-21)	●●●●●●	4,835,600	분할	
4		◆◆◆◆함 No.3 주기관 감속기 쿨러 복구수리 대금 지급결의보고	‘25-12-15	‘25-12-10 (‘25-11-01)		1,664,300		
						소계	6,499,900	
5	■□■□함	(■□■□함) No.1 고속단정 선외기 100시간 정비 대금 지급 결의 보고	‘25-04-01	‘25-03-19 (‘25-03-10)	♣♣♣♣	2,220,000	분할	
6	(고속단정)	■□■□함 No.2 고속단정 선외기 100 시간 정비 수리 대금 지급 결의 보고	‘25-04-17	‘25-04-07 (‘25-03-10)		3,091,000		
						소계	5,311,000	

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표-5] 관서운영경비 500만원 분할 집행내역(연안구조정)

연번	계획정비	지급건명	지급일자	정비일자	수령인	집행금액	비고
1	25년 상반기	포항서 ♣♣♣♣♣정(S-㉠㉠) 상반기 계획정비(추진기) 대금 지급결의 보고	'25-03-18	'25-03-07	(주)♣♣♣♣♣	2,181,000	분할
2		◆◆파출소 ♠♠♠♠♠정(S-㉡㉡)상반기 계획정비(추진기) 수리대금 지급결의 보고	'25-03-31	'25-03-21		4,919,000	
					소계	7,100,000	
3	25년 하반기	㉠㉠㉠파출소 ♠♠♠♠♠정(S-㉢㉢) 하반기 계획정비(추진기) 대금 결의 보고	'25-11-13	'25-11-08	(주)♣♣♣♣♣	4,983,000	분할
4		◆◆◆파출소 ♠♠♠♠♠정(S-◆◆◆) 하반기 계획정비(추진기) 대금 결의 보고	'25-12-08	'25-11-12		4,983,000	
					소계	9,966,000	
					합계	17,066,000	

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표-6] 경비합정 잡유 구매대금 관서운영경비 집행내역

연번	예산항목	지급건명	지급일자	수령인	집행금액	비고
1	■■■■■-■■■ -210-09 (시설장비유지비)	2025년 2차 ○○구매 대금 지급결의	2025-07-09	○○○○○○○	4,750,000	분할
2		2025년 3차 ○○구매 대금 지급결의 보고	2025-07-22		4,900,000	
3		2025년 5차 ○○대금 지급결의 보고	2025-09-04		3,170,000	분할
4		2025년 5차 합정 ○○ 구매대금 지급결의 보고	2025-09-16		4,965,000	
				합계	17,785,000	

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동일 성격의 지출 건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처리(기관경고)

7) 수사정보 수집(미제출) 관리대책 마련 필요 [통보]

- (판단기준) 「수사정보 수집 및 처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364호, '24. 4. 4.)」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수집 및 작성), 제5조(수사정보 제출의무), 제6조(제출방법), 제10조(수사정보 처리)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정보를 발굴·수집해야 하고, 범죄유형에 따라 입건전조사정보, 범죄동향정보, 기획정보, 정책정보를 구분하여 작성

- 「수사첩보 업무 표준 실무지침⁴⁾」에 따라, 경정 이하 외근 수사경찰은 월 2건 이상, 내근 수사경찰은 월 1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
- (문 제 점) '24년부터 '26년까지 수사부서 소속 경정 이하 외근 수사경찰이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수사첩보 건수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7]과 같이 외근 수사경찰 7명이 수사첩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확인

[표-7] 수사첩보 제출 현황

(단위 : 건)

연번	행위당시 소속	계급 성명	‘25년								‘26년	미제출 건수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	1월		
1	●●●	## ○○○	1 (-1)	2	1 (-1)	1 (-1)	0 (-2)	2	1 (-1)	1 (-1)	7	
2	○○○○○	## ●●●	‘25. 2. 23. 착임		2	1 (-1)	0 (-2)	1 (-1)	2	2	4	
3	○○○○○	#& ◇◇◇	‘25. 2. 23. 착임		2	1 (-1)	0 (-2)	1 (-1)	2	2	4	
4	○○○○○	#& ◆◆◆	‘25. 2. 23. 착임		1 (-1)	1 (-1)	1 (-1)	1 (-1)	2	2	4	
5	○○○○○	@# □□□	‘25. 2. 23. 착임		2	0 (-2)	0 (-2)	0 (-2)	2	2	6	
6	○○○○○	@# ■■■	‘25. 2. 23. 착임		2	1 (-1)	0 (-2)	0 (-2)	2	2	5	
7	○○○○○	@# △△△	2	2	1 (-1)	0 (-2)	0 (-2)	0 (-2)	2	2	7	

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의 수사첩보 제출 이행 준수 요구 및 중요성 각인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 월별 수사첩보 현황 점검·분석 등 개선방안 마련(통보)

8) 수사 진행 사항 통지 누락 (기관경고)

- (판단기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 위 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7일 이내, 3. 위 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7일 이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함

4)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3070('24. 11. 9., "수사첩보 업무 표준 실무지침 개정(Ⅱ) 알림"

-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 피해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며, 피해자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 등은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
- (문 제 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피해자 및 타인 신고로 접수되어 수사 개시 된 사건 중, 피해자등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확인

[표-8] 수사 진행사항 통지현황

연번	접수	접수번호 (일자)	사건번호 (일자)	죄명	결정	수사 진행상황 통지 현황				담당자
						수사 개시	3개월	4개월	결과 통지	
1	피해자 신고	2024-**** (‘24.*.**.)	2024-*** (‘24.*.**.)	야간선박 침입절도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2	타인 신고	2025-* (‘25.*.**.)	2025-*** (‘25.*.**.)	업무상과실 치상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3	피해자 신고	2025-*** (‘25.*.**.)	2025-*** (‘25.*.**.)	특수협박	--	×	×	×	○	## ●●●
4	피해자 신고	2024-**** (‘24.*.**.)	2024-*** (‘24.*.**.)	재물손괴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5	피해자 신고	2025-*** (‘25.*.**.)	2025-*** (‘25.*.**.)	재물손괴	--	×	○	해당 없음	○	## ◆◆◆
6	피해자 신고	2024-**** (‘24.*.**.)	2024-*** (‘24.*.**.)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7	피해자 신고	2025-**** (‘25.**,**.)	2026-* (‘26.**,**.)	폭행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수사종결 시까지 관련 규칙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등 관련 업무 이행 철저(기관경고)

9) 경찰관 견문수집 및 제출실적 관리 필요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제3항에 의하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
-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 제3조(견문제출 의무 및 면제)에 따르면, 경정 이하 경찰관은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매월 견문을 제출해야 하고, ①월 20일 이상 파견·출장·교육·휴가·병가·휴직자, ②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항공단, 특공대, 합정

건조감독관, 구조대 근무 경찰관, ③신임경찰관 임용 및 타 기관에서 전입 시 해당 월은 견문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25. 1. 1. ~ '26. 3. 31.까지 소속경찰관이 제출한 견문수집 내역 중 [표-9]와 같이 월별 견문 수집 목표량 미달한 것이 확인되고, 이 중 일부 경찰관이 월 20일 이상 교육, 파견 등으로 견문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 하더라도 견문 수집량이 매우 부족한 사실 확인

[표-9] 월별 견문 수집 미달 건수

	2025년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운영현원(명)	475	466	465	461	460	457	453	451	454	461	457	455	456	460	482
목표량(건)	547	534	533	529	528	525	521	519	522	531	527	525	528	532	554
수집량(건)	337 (-210)	307 (-227)	308 (-225)	284 (-245)	282 (-246)	269 (-265)	294 (-290)	278 (-274)	290 (-232)	272 (-259)	318 (-209)	308 (-217)	318 (-210)	288 (-244)	332 (-222)

* 목표량: 포항서 외근 경찰관 및 이외 경찰관 견문 제출 의무 건수 기준으로 합산

-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관의 책임감 있는 견문 제출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고가치 견문 제출자에 대한 혜택 등 견문 제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통보)

10)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훈련 미흡 (통보)

- (판단기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을 제정('24. 7. 22.) 시행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부서에서는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 시 “영상음성 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영상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하기 위해 [표-10]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정보통신 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표-10]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부서별 관리책임자

구 분	경 찰 서	합 정	파 출 소	구 조 대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의 장	합·정장	파출소장	구조대장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계장 또는 팀장	부장	팀장	팀장

*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4조 재구성

-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치 사용법, 사용지침,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 이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 포함 연 2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 (문 제 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규칙에서 정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팀장급 또는 팀원(서무)로 잘못 지정하거나, 인사발령으로 기존 관리책임자가 진출된 이후 신규 관리 책임자를 변경하지 않아 현행화 미이행
- 운용규칙에 따라 연간 2회 사용부서의 장(함·정장) 주관 교육 미실시, 파출소 및 구조대에서는 각 팀별 기기 사용자 대상으로 연간 1회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 확인
-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부서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방안 마련(통보)

11)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에 대한 적극적 안전관리 필요 (통보)

- (판단기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 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 이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25)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 허용
- (문 제 점)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할해역의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 출항 현황 및 조업 제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남부 앞바다에 풍랑 주의보 발효 중 관할 파출소의 안전관리 없이 5톤 미만 어선이 출입항한 사실 확인
- ▶ (조치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기상특보 시 어선·낚시어선 출항 제한 관련 개선사항이 일선 현장부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교육·관리하시고, 기상 특보 시 적극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맞는 대책 방안 마련(통보)

5)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및 기간(제4조 제3항 관련)

5. 경상북도 연안 :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의 해역 / 1.1 ~ 12.31

3. 현지조치(5건)

연번	부서명	내 용	이행결과																
1	○○○○○○ ○○팀	[RFID 관리체계 보완 권고] * 과다지급 장비 재배부 및 관리자 실제 점검 시행 권고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9조(지급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함정 승조원 위치발신용 RFID의 송신기는 함정별 정원 및 교육생 등 함정에 승조하는 인원수만큼 지급해야 하고, - 제30조(관리 및 운용)에 따르면, 함정 관리자는 RFID 작동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해양경찰서 관리자는 소속 함정의 RFID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 - (확인된 문제) 정·현원에 비해 함정에 과다 지급하거나, 해양경찰서 관리자는 서면으로 장비 현황, 운용실적, 개선 건의 사항 양식을 배포하여 함정마다 취합할 뿐 실제 RFID 작동 및 보관 상태 등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점검 전무 - (조치결과) 과다 지급된 장비 재배부 및 해양경찰서 관리자의 대면점검 등 RFID 일제정비 권고	현지개선																
2	△△과	[△△과 임차차량 운행결과 작성 등 관리철저] - (판단기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구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운행절차)에 따르면, 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 후 운전자가 직접 장비나라의 운행일지에 운행결과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 - (확인된 문제) △△과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차량을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장비나라 운행일지에 운행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등 공무용 차량 관리 부실 [표] △△과 임차차량 현황 <table><tr><th>차 명</th><th>차량 번호</th><th>유 종</th><th>차 종</th><th>용 도</th><th>임차시작</th><th>임차종료</th><th>배치부서</th></tr><tr><td>□□□ 하이브리드</td><td>○○허 &&&&</td><td>취발유</td><td>중형 승용</td><td>업무용</td><td>'26.01.01</td><td>'26.12.31.</td><td>△△과</td></tr></table> - (조치결과) 장비나라에 유류 사용량 및 운행기록 등 운행결과를 등록하여 부정 사용 예방 등 공무용 차량 관리 철저 권고	차 명	차량 번호	유 종	차 종	용 도	임차시작	임차종료	배치부서	□□□ 하이브리드	○○허 &&&&	취발유	중형 승용	업무용	'26.01.01	'26.12.31.	△△과	현지개선
차 명	차량 번호	유 종	차 종	용 도	임차시작	임차종료	배치부서												
□□□ 하이브리드	○○허 &&&&	취발유	중형 승용	업무용	'26.01.01	'26.12.31.	△△과												

연번	부서명	내 용	이행결과
3	○○○○○ ○○○○과	[○○○훈련 결과보고 기한준수 필요] - (판단기준)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9조(방제훈련 결과 보고) 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 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훈련상황도, 훈련진행사진, 평가관의 훈련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 (확인된 문제) ○○○○훈련 현황 점검 중 10건 중 4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보고 하는 등 규정된 결과보고 기한 미 준수 하였으나, 바로·해 운영시스템에는 진단결과를 “해당없음”으로 선택하여 등록 - (조치결과) ○○○○훈련 결과보고 관련 내용이 바로·해 운영 시스템에 업무참고 사항으로 변경되어 7일 이내 결과 보고를 미준수하지 않도록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현지개선
4	○○○○○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관련, 자체 관리계획수립 권고]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별도 규칙·회칙·정관(복지위원회, 장학회, 정보사업 업무편람 등)에 따라 운영되는 계좌* 및 단순 운영비성 계좌 등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불필요 ⇨ 자체 관리·운영 방안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안내 * 상부상조, 각종성금, 기획특수활동비 계좌 등 - (확인된 문제) 포항해양경찰서 상부상조회, 장학회, 정보사업 현금계좌 관리현황 점검 결과, 자체 관리·운영방안의 수립 없이 기존 관리방식을 유지하면서 계좌 입출금 시 문자서비스만 별도로 신청하여 운영 중인 것을 확인 - 현금계좌 관리담당자 지정, 입출금 시 관인 날인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회계사고 방지 대책마련 필요 - (조치결과)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계좌 중 상부상조회, 장학회, 정보사업 현금계좌의 자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	현지개선
5	◆◆◆◆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관리 철저] - (판단기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및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지침에 따르면, 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촉에 관한 심의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관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최대 60일 이내 처리(강행) 해야한다고 규정 - (확인된 문제) 해양재난구조대 위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심의하는 등 위원회를 일부 미흡하게 처리 - (조치결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지침 개정('26.4.3)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기산하여 기한 내 심의하고, 이에 따른 통지, 위촉장 발급 등 운영·관리 철저 권고	현지개선